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김철욱(6575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7414호

시행일자 2024. 10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대통령령 제34927호(2024. 10. 2.)

3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내용

- 감염병의 발생·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시행일 : 2024. 10. 2.

붙임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개정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 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
개원의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